

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3. 13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공중위생관리법 중 개정법을 공포로 현행 공중위생영업의 개설 통보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사무분장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 7조②항에 15.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
- 나. 제10조 6.공중위생영업소 및 식품위생영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, 제3조2

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 ②에 15.공중위생영업소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

'15'를 '16'으로, '16'을 '17'로, '17'을 '18'로 하고

제10조중 '6.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'을 '6.공중위생 영업소 및 식품위생
영업소관리에 관한 사항'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①(도시국에두는과)(생략) ②(생략) 1.~14(생략) <신 설> 15. 지적업무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관리 16.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17.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제8조~제9조(생략) 제10조(소관업무) (생략) 1~5(생략) 6. <u>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소에 관한 사항</u> 7~8(생략)</p>	<p>제7조①(도시국에두는과)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.~14(현행과 같음) 15. 공중위생영업소 신고에 관한 사항 16. ----- 17. ----- 18. ----- 제8조~제9조(현행과 같음) 제10조(소관업무) (현행과 같음) 1~5(현행과 같음) 6. <u>공중위생영업소 및 식품위생영업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</u> 7~8(현행과 같음)</p>